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6-40호
2026. 8. 28.(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훈 령(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526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527호) 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훈령 제528호) 8

고 시(1)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6-68호) 35

공 고(4)

-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처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908호) 36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909호) 38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공고 제2026-911호) 4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912호) 48

공 람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미디어홍보과 ☎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6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김 찬 술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52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때에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
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을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용 승인 여부를 결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제3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부서의 동
의를 얻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3개월 미만)”을 “(1개월 이내)”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①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간제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장 : 기간제업무 총괄 국장

2. 당연직 위원 : 관리부서의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팀장

3. 위촉직 위원 : 인사노무·노사관계 전문가, 기관 사업(복지·교육분야 등) 관련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변호사,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의3(준용)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0조제1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근로자의 날로”를 “노동절로”로 한다.

제2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채용부서	○○과				
사업내용	○ (사업명) ○ (사업 세부내용) ○ (신규/지속사업 여부)				
채용인원	(예) 2명	채용기간		고용형태	(기간제 또는 파견·용역)
직종 및 담당업무	○ (직종명) ○ (구체적인 업무 내용)				
채용사유	○ (비정규직 채용 사유 명시)				
근무형태	☐ 통상노동자 ☐ 단시간노동자 ☐ 초단시간노동자				
근로조건	○ (소정근로시간) 주당 소정 근로시간 ○ (적정임금) 지급여부 및 금액 ○ (공정수당) 지급여부 및 금액 ○ (초단시간) 주휴수당·공정수당·연차수당 시간 비례 지급				
소요예산	○ (인건비) 기본급, 수당 등 ○ (관리비용)				
채용절차 (기간제 한정)	○ (공개경쟁채용 여부) 공고 방식·기간, 공개경쟁채용이 곤란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 검토 ○ (면접 시 제척·기피제 운영 여부) 미운영시 사유 ○ (공정채용확인서 징구) 미운영시 사유				
기타사항	○ 기타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 기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무·보수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절차 및 채용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함(제4조의2 및 제4조의3).

다. 법률 제명 변경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정비함(제20조제1항).

라. 병가기간 중 휴무일 및 주휴일의 급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제24조제3항).

마.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표준서식을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6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김 찬 술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52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4조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을 “제4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여 규정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의 적정성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함(제4조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6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김 찬 술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52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보건소·사업소 및 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제4조(보안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보유한 중요 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점검·감사·교육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총괄부서 : 토지정보과장

2. 관리부서 :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감사 및 교육
4. 공간정보의 보안 진단 및 현황 조사
5.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6.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총괄부서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관리부서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안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관련 사항
2.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 기준
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

른 보안대책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보호대책

5. 그 밖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주요 사항

제3장 공간정보 분류 기준 및 관리

제9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세부 분류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제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② 공간정보를 분류할 때에는 세부 속성별로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고 최고의 속성을 대표 속성으로 정하여 별지 제1호서

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 공간 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비공개 공간정보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중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정: 보안담당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
2. 부: 소관업무 팀장 또는 업무 담당자

제1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가. 정: 보안담당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

나. 부: 소관업무 팀장 또는 업무 담당자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를 다음 각 목에 따라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가. 관리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 부여, 자료 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 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 내용에 따라 기본 항목·전 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이용

4.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자료 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5. 해킹 등 불법 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대책 마련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

②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호 대책

제12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구청장은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시 공간정보의 위·변조, 불법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가. 정: 보안담당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

나. 부: 소관업무 팀장 또는 업무 담당자

2. 방화벽 등 침입 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운영

3.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 자체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4.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 등 불법 접근과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5. 공간정보유통망 점검·확인

제13조(공간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출력한 때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시나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③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제14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 또는 구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구청장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이 보안관리 책임자가 되어 관련 직원 가운데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 인가자 사전 지정 및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 기록
4.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체계 구축
5. 비인가 카메라·휴대폰·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 불법 촬영 및 자료 유출 방지
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 인원에 대한 신원 확인, 서약 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및 파기
5. 그 밖에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간정보를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서약 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기밀유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② 보안담당관은 외국인의 특이 동향 등 보안상 위험한 사실을 발견했을 시 우선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관련 사항을 즉시 구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시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보안담당관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별표2)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절차·시행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제1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1.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2. 소속기관·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은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구청장은 비공개 공간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미리 필요한 보안대책 및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구청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기간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제6장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치 등

제22조(보안지도) ① 구청장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에게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리부서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
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
3. 공간정보의 유출·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
4. 그 밖에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③ 구청장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보안점검 및 감사) ① 구청장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총괄 부서 및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보안점검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안감사를 위해 보안담당관 등 공간정보 보안 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시장에게 공간정보보안 전문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점검·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보안교육) ①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 소속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의 신규임용 및 전출·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관리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25조(보안사고 조치)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법 제37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무단 이용
3.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위반 행위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의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구청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는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2.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3.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4.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5.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6. 「대전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7. 그 밖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공간정보 세부 분류 기준(제9조 관련)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 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 개 제 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u>25cm보다</u>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u>25cm보다</u>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 자료
	공 개 제 한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 단,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 자료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 유지 ○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전자지도	비공개	○축척에 관계 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 개 제 한	○군사지도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공간 정보	비공개	○접경해역 수심 자료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 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 자료
	공 개 제 한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 자료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 자료 ○해도, 전자해도 등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 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주소정보기본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 지역 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 자료
	공 개 제 한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 자료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 개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 자료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 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주소정보사업으로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대상시설을 제외한 주소 정보안내도

[별표 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대덕구가 보관·관리·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하여 공간정보의 안전 관리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대덕구가 생산·관리·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반출 또는 파기 시기

-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 발발로 공간정보를 현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을 때
-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가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는 때
-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그 밖에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 라. 기타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반출 또는 파기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 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 명령

보안담당관은 전 3항의 상황에 따른 반출 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 즉시 구청장의 반출 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관의 반출 조치

가) 공간정보 등 반출 요원 소집 및 반출 지시 반출 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 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 용기 개방과 인출 작업 반출 요원은 보관 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 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 시 호위

반출 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반출 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 명령

당직 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반출 시기임이 파악된 경우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따라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 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 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반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 번호 등 확인, 당직 책임자는 당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공간정보 보관장소의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 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 지시

당직 책임자는 당직자(청경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서 각 국·과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하도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받은 해당 국·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 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 시 호위

반출 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반출 장소

-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2) 반출 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 절차 및 장소

-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지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4항 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

기관 구분	시도 구분	관리기관	관리부서	관리담당자			목록작성 일	시스템 명칭	레이어명		정보의 주요내용 (레이어 설명)	구축 완료 일	데이터 구축 형태	데이터 유형		최초 생성 일자	갱신 주기	최종 갱신 일자	공개 구분	비용			제공 실적 (건)	비공개 / 공개 제한 건	비고
				성명	연락처	이메일			하위 레이어	표현 레이어				벡터	래스터					구분	금액	근거			

[별지 제2호서식]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관리 번호	제작일자	제 목	형태	수량 (건)	보호 기간	보관 장소	비고

※ 비고란에는 보호 기간 경과 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제공(복제·출력) 관리대장

일자	공간정보	자료 구분	건수 (매수)	출력자 (복제자)	제공 사유	열람·수령자		예고문	승인관
						소속	성명		

※ 자료 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공개제한(비공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신 청 인 신원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유선		전자우편	
		무선			
	소속기관	기관명		직 책	
대표자					
요청자료 내 역	공간정보 종류			신청지역	
	요청자료				
	사용용도			제공방법	
	제공기관			반납일자	
보안대책					

각 서

위 신청 자료에 대하여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준수.
2. 본 자료를 신청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치 않으며 관련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치 않음.
3.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수를 요구하면 발급된 자료를 반납함.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신 청 인 (신청기관) 신원사항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기관(단체)			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제 공 내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납일	
	보안대책					

본인은 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아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따른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산출물 등은 제공기관 환수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폐기(반납) 확인 현장점검	
○ 확인일자: ○ 확 인 자: ○ 확인장소: ○ 확인내역: ○ 확인결과: 폐기(반납) 완료 [폐기(반납) 확인서 징구]	
폐기(반납) 사진 대지	
전	
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개정사항을 현행 규정에 일괄 반영함으로써,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규정의 제정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제1조 및 제2조).
- 나. 공간정보 관련 부서 정의를 명확히 함(제5조제1항).
- 다. 공간정보 국외반출 시 승인 주체를 정비함(제14조제2항).
- 라. 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책임자 역할을 명시함(제15조).
- 마. 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시 보안조치 관련 사항을 구체화함(제16조제2항).
- 바.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외국인 종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조치 및 통보 기한을 명시함(제17조제2항).
- 사. 안전반출 및 파גיע획의 작성 주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내역 관리 주체 등을 명시함(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및 제4항).
- 아.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을 명시함(제20조제1항 및 제2항).
- 자. 보안교육 실시 및 관리 주체와 보안사고 발생 시 통보 대상을 명시함(제24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 차.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수정·신설함(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	
			사 유	고시일
신탄진동 850번지	한절구지로 112	건물신축	행정지명[한절구지]를 반영	2022. 12. 23.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http://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처분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17번지(구거) 외 1필지 내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한 행위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주소지 부재로 인한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 고 명: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8. ~ 2026. 9. 11.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5. 공시송달 내역

연 번	소재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m ²)	비 고
1	읍내동 517	미상	미상	무단경작	65	
2	읍내동 517	장*철	미상	물건적치 및 가설건축물	64	
3	평촌동 508-2	미상	미상	무단경작	27	

6. 원상회복기한: 2026. 9. 23. 까지

7. 공고내용

-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자원농생명과(☎042-608-6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30조(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 고 명: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행정처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같은 법 제30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6. 8. 28.(금) ~ 9. 11.(금) (14일간)
4. 공고대상: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 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6. 9. 25.(금)까지 시행 예정인 행정처분(시정명령)에 대한 오류 정정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 다. 위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서는 송달 효력(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이 발생합니다.
 - 라. 처분의 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도시계획과(042-608-5104)로 연락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별첨]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법현황			반송사유
		대상지	행위내용	불법규모	
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392-2 한전사원아파트*동-20*호	법동 21	농막 설치	가설건축물 9.6㎡	수취인불명
강*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756번안길 *** (용호동)	용호동 88-7	농막 설치	가설건축물 57㎡	수취인불명
신*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	장동 371-2	차고 설치	가설건축물 30㎡	폐문부재
이*철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601번길 **	송촌동 72	창고 설치	가설건축물 9.6㎡	폐문부재
박*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13, 풍림아파트 10*동 100*호	와동 175-3	농막 설치	가설건축물 28㎡	폐문부재
(주)케**부동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 (역삼동)	용호동 53	농막 설치	증축 85㎡	이사불명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을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기 간: 2026년 9월 1일 ~ 9월 22일
- 장 소: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 터 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

☐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기 간: 2026년 9월 1일 ~ 9월 22일
-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 제출방법: 제출처(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의견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로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한 뒤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토지정보과(☎042-608-5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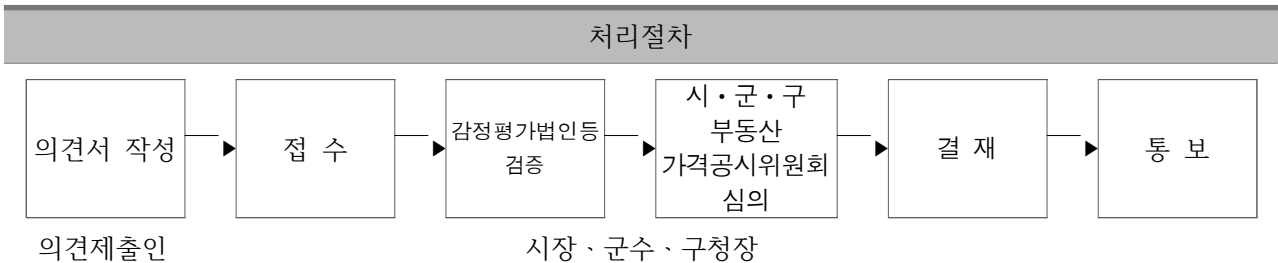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내용	열람지가	원/m ²	의견가격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
Person submitting opinion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submitting opinions	Perused Price KRW/m ²	Submitting Persons's Opinion KRW/m ²
	Reasons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Paragraph (5) in Article 10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submit an opinion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as ab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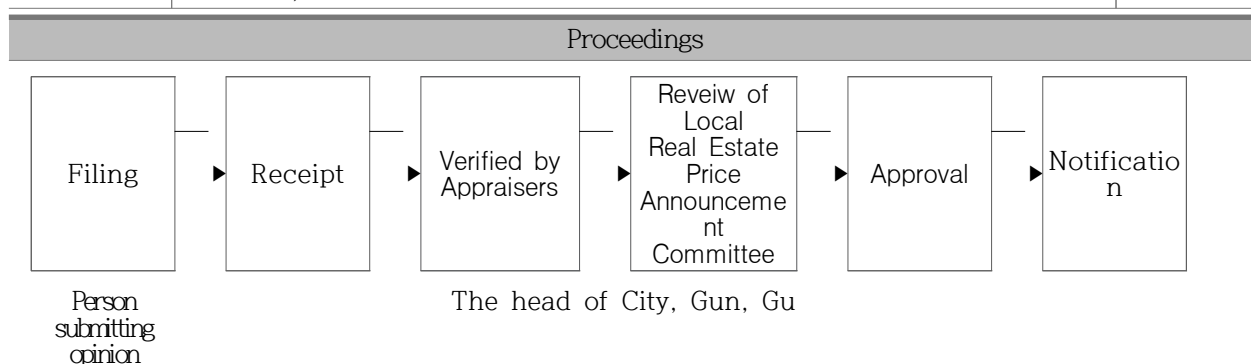
Date:

Person submitting opinion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opinion(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1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전담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전담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센터장 및 전담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비밀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인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10(오정동, 도란도란 1층)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인구정책과 대덕미래전략TF

(전화 : 042-608-4602, FAX : 042-608-3837, E-mail : ckymjsjbu@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과 담당자 최길용(전화 : 042-608-46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개발·재건축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담지원센터(이하 “전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전담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① 전담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정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채용한다.

③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센터장의 의무) 센터장은 전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담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할 것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1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할 것

제5조(전담지원센터의 업무) 전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상담 지원 및 자문 업무
2.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3.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특성별 맞춤형 시행방안 연구·개발
4.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 사전 검토 및 자문
5.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처리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상담
6.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 내·외 동향 및 거짓·허위정보 파악 등 주민 피해 예방
7.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문가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및 조합임원 등 교육 지원
8. 재개발·재건축사업 제도개선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9. 그 밖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도시정비, 법률, 회계, 갈등조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관련 위원회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1. 전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정비사업 상담 및 자문 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설명회 등 지원)

2.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사전 검토 및 자문
3. 주민 간 분쟁 시 법률 자문 및 갈등 조정
4.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⑥ 접수된 상담 및 자문 사항 중 중요사안에 대해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문단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단 업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단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사유를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신청) ① 전담지원센터에 자문 및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전담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상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 통보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자문위원,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사전검토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조합·법인번호)		신청 구분	☐ 조합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개요						
자문신청 분 야	☐ 도시정비사업 등 관련 정보 ☐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및 운영 관련 ☐ 주민간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 ☐ 그 밖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상담 등					
신청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담지원센터 귀중

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처리 통보서	
1. 신청인	
2. 신청내용	
3. 자문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담지원센터장 (인)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자문단 수당

○ 관련조문 : 제3조(전담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제11조(수당 등 지급)

3. 비용추계 전제 : 전담지원센터 운영 및 자문단 구성

4. 비용추계 결과(내역)

○ 2027년 본예산 264,800천원 편성 필요(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자문단 수당)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총비용(a-b)		264,800	264,800	264,800	264,800	264,800	1,324,000
세출	소계(b)	264,800	264,800	264,800	264,800	264,800	1,324,000
	센터 인력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운영비(사무관리비 등)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자문단 수당	44,800	44,800	44,800	44,800	44,800	224,000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전담지원센터 인건비 : 200,000천원

- 5,500천원×3명×12개월 ≒ 200,000천원

○ 일반운영비 : 20,000천원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 20,000천원

○ 자문단 수당 : 44,800천원

- 자문단회의 참석수당 : 14인×100천원×4회×80% = 4,480천원

- 자문단 자문수당 : 14인×300천원×12회×80% = 40,320천원

6. 재원조달 방안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의존 재원	구 비	264,800	264,800	264,800	264,800	264,800	1,324,000

나.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구비 100%

7. 부대의견 : 해당없음

8. 협의사항 : 기획실 예산팀 협의

9. 작성자 :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규제영향분석서

가. 분석대상 규제 개요

1. 규제사무명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구분					
		신설	○	강화		존속 기한 연장	
3. 규제조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						
4.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서 : 인구정책과(대덕미래전략TF) ○ 작 성 자 : 미래전략국장 이선규, 담당자 최길용						
5. 근거법령 등	없음						
6. 피규제자 및 이해 관계자 등	자문위원						
7. 규제 존속기한	조례 개정 시까지 - 향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까지 존속						
8. 종전규제 및 신설 (강화) 규제의 내용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문단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단 업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단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나.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안전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움

2) 규제의 신설 필요성

-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제한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의 사전 방지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 향상 필요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해당사항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해당사항 없음

3)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이해충돌 방지 및 심의의 공정성 확보 사항으로 적정

2) 이해관계자 협의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당 규제는 위원회 운영의 목적인 중립성을 뒷받침하며, 명문화된 근거를 통해 부적격 위원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됨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